

전주삼천6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9.08.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2019 .08.22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19000784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금결원시스템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전주삼천6단지	전주삼천6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9	063-228-3584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전주삼천6단지	전주삼천6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9	063-228-3584	'00.04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전주삼천6단지	39.77	39.77	19.4640	9.1621	68.3961	복도식/개별	177	15	53

※ 해당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에는 공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주택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전주삼천6단지	39.77	13,692,000	2,738,000	10,954,000	190.050	21,000,000	34,692,000	85,050

- 위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 08. 22.) 현재 주택건설지역(전주시,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적상실자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임주 금지 규정(공특법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모집일정

■ 모집일정

단지명	주택형	신청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현장방문 신청장소
전주삼천6단지	39.77	1/2순위	2019.08.29(목) 10:00~18:00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2019.09.05(목) 16:00 이후	2019.11.07(목) 16:00 이후	전주삼천6단지 관리사무소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화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국민임대)선택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6.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나,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연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의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10:00부터 18:00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은 당일만 가능)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전채서비스 → 청약신청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 외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정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및 분리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정과 관련하여 거주지작업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00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 지 여부를 꼭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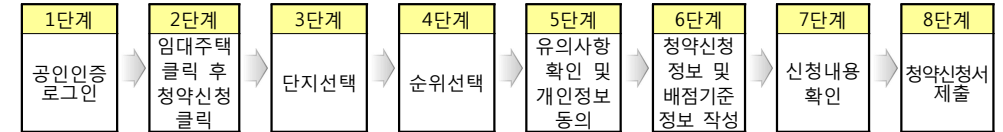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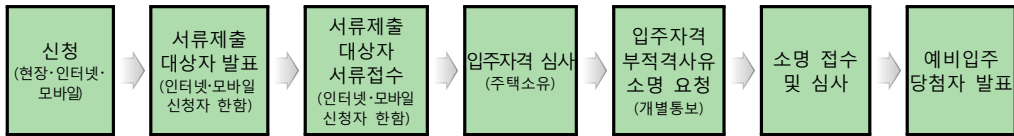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7. 선정기준

■ 선정절차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순위 결정기준

□ 수도권외 지역

구 분	순위결정 방법
1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8.22.)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8.22.)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전라북도) 거주자에게 공급
- **청약납입횟수 6회이상**은 **청약순위확인서로**, **6회미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으로 함**
- 청약납입횟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순위	→	전주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전주시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예비입주자 선정기준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방법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①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8.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9.08.22)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작성	1통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1순위에 한함 •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주택관리번호 :2019000784 ※청약순위확인서에서 표시된 순위는 실제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 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서비스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 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주민센터	1통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1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가 만30세 이전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경우	주민센터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증 사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 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증 사본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진행여건에 따라 예비자 당첨발표 일정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조회 → LH예비입주자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 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	이 주택의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나,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에 발표합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센터의 고객센터-예비입주자순위"서비스를 통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택관리공단 전주삼천6관리소(☎ 063-228-3584)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입주안내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00m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전주삼천6관리소장

[붙임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무주택 서약서

[앞면]

√ 다음의 설명을 읽어 본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 신청자격에 대한 서약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아래의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에 해당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①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 ②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18.12.11)되어 개정일 이후** 공고된 주택의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서약자
(계약자)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전주삼천6관리소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예제면 해당) - 연차직제(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자격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동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자녀제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제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금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인연금 등

-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항목 |
|--------------|--------------------------|----------------------------------|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요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주주·채권·주주권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책,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등록번호, 연차,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책,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연차,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연주 소득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차, 계약기간 거주지소재지
임주자 만족도조사 연주 소득자	임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납입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금융 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 료서신 및 기증금 수령 서비스	성명, 주소, 연차, 계약 및 임대 보증금, 임대차 계약종류, 보증금 회계

전주삼천6단지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신청 위임장				
위임 하는자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위임하는 자 (인)

위임 받는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와의 관계		전 화 번 호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으로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각 서

(분양권등 소유 관련)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임차단지명 및 동·호수 :
- 소유 분양권등
 - 분양권등의 단지명 :
 - 분양권등의 입주예정일 : 년 월 일(가장 빠른 입주예정일)

상기 본인(세대구성원포함)은 분양권(입주권등)을 소유 또는 소유 후 처분할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예정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권등을 처분하거나 분양권등의 입주예정일이 도래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며, 상기 임대주택에서 자진 퇴거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각서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전주삼천6관리소장 귀하

